보험기간

보험종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보장개시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종신까지 - 10년 보증지급형: 정액형, 자유설계형 - 20년 보증지급형: 정액형, 자유설계형 - 100세 보증지급형: 정액형, 자유설계형		

※ 다만,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의한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하고자할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보험종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확정연금형	보장개시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5, 10, 15, 20년) - 정액형, 지유설계형
상속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가입조건

구분	적립형
보험료 납입기간	2, 3, 5, 7, 10, 12, 15, 20년납
보험료 납입주기	월 납
연금개시나이(X)	45세 ~ 80세
가입나이	0세 ~ (X-11세)

가입한도

구 분	가입한도
적립형	월납보험료 10만원 〜 100만원(구좌 기준) • 1구좌 〜 50구좌

보험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재(보험대상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시 반드시 그 피보형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상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약관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계약전 알릴사항) 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재(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드립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다만, 진단계약 또는 단체(취급)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또한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판매담당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세(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청약일부터 3개월(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료를 납입하시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을 납입최고 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막잌까지를 납인최고(독촉)기간으로 한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경비한 제도로서 계약지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기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괴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보험상품의 보장계약순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연복리 3.5%입니다.(다만, 동 이율은 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이 상품의 적립액에 대한 적립이율은 신공시이율(연금)로 적용합니다.)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당사보험상담안내: KDB생명 콜센터 1566-6503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국번없이 1332 / 생명보험협회: 02)2262-6565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상품내용을 설명해드리고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이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DB생명 홈페이지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www.kdbife.co.kr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비교공시: www.klia.or.kr

● 기존계약 해지 후 가입시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재(보험대상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Tel: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www.fss.or.kr)

판매사

보험사 KDB생명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35번지 올리브타워 콜센터: 1566-6503 www.kdblife.co.kr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2-1876호(심의일자: 2013, 3, 29)

판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대구은행(2003091011)

발행 : 홍보팀

검수: 상품개발팀



보험사 KDB생명

PHIS KDB알찬연금보험



KDB알찬연금보험의 특징



연금액 자유설계 기능

재정/목적 설계에 따른 노후생활자금 그대로를 연금액으로 설정



고액 보험료 할인(가산)

기본보험료	할인금액
30만원 초과 70만원 미만	기본보험료 중 30만원 초과금액의 1.0%
70만원 이상	4,000원 + 기본보험료 중 70만원 초과금액의 2,0%

※ 위 할인금액에도 불구하고 기본보험료의 1.5%를 최고한도로 합니다. ※ 납입기간 중 기본보험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할인(가산)금액을 적용합니다.



맞춤형 연금형태 제시

고객의 재무상태 및 니즈에 따른 적립형 연금 제안으로 효율적인 노후설계 가능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중도인출 추가납입, 납입중지 등 유연한 보험료납입



연금개시 축하금 지급

연금개시시점에 일시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재원의 일부를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포함 활용



다양한 연금지급유형

고객의 성향 및 가족구성 형태에 따라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 알맞은 유형선택 가능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 보험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 체결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기준 : 1구좌)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피보험재(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주)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시망하였을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시망당시의 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리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립액 계산시 고도후유 - 프로구마 S에프리즘의 ST 사용하다 할당 되도 역에 단어하시합니다 프라마, 언론S합사에서 SE 데에 따라 가造다고 프로구 장해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에 해당하는 보장계약순보험료를 차감하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종류			지급사유	지급금액
		개인형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10년, 20년, 100세 보증지급 - 정액형, 자유설계형
종신 연금형		주피보험자 (주된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 10년, 20년, 100세 보증지급 - 정액형, 자유설계형
18	부 부 경이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 대상자)	주미보험재주된 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 이후에 사망하고 종미보험재확장 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보증지급기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충지급기간 이후 주피보현재주된 보험대상자 연금자급 해당액의 (50%, 70%, 100%)지급

[※] 다만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의한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이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여분, 게구시가 도함기만 중 구는 제(표(제구대중의 한경 중)에 의한 간급시합성대를 한경이표시 를 경구에 한마어 아내고 흩어 극중합되어.					
연금종류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시급여금		시급여금 미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개시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 적립액의 0%~70%까지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 (5%단위 선택)	
	개인형		피보험재(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종신연금형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10년, 20년, 100세 보증지급 - 정액형, 자유설계형	
종신 연금형	이와 너머 너피	주피보험자 (주된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종신연금형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 10년, 20년, 100세 보증지급 - 정액형, 자유설계형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재주된 보험대상재가 연금지급개시 이후에 사망하고 총피보험재확장 보험대상재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보증지급기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증지금기간 이후 주피보험재(주된 보험대신자) 연금지급 해당액의 (50%, 70%, 100%)지급	
확정연금형		ā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 기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확정연금형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 정액형, 자유설계형	
상속연금형		쳟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상속연금형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다만, 피보험자 (산합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적립액 지급)	

주) 1. 연금계약의 적립액이라 함은 연금계약의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를 신공시이율(연금)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연금지급액 예시

기준 : 기본보험료 100만원, 10년납, 남자 40세, 65세 연금개시, 신공시이율(연금) 4,05%, 고액가산, 부부형 종피보험자 연금지급률 100% 가정

	종신연	면금형	하저여그성
구분	개인형	부부형	확정연금형
	20년보증	20년보증	20년확정
2013년 4월 현재 공시이율(4.05%)가정시	매월 119만원	매월 104 만원	ու ց 148 ըթ
2013년 4월 현재 표준이율(3.5%)가정시	매월 100만원	매월 87 만원	ու ց 127 ըթ
최저보증이율	매월 54 만원	매월 44만원	매월 <mark>74</mark> 만원

구분	상속인	변금형	 - 사망시 상속일시금 지급	
ТЕ	년도	년도 이후	시경시 경축될지금 시합	
2013년 4월 현재 공시이율(4.05%)가정시	매월 81 만원	매월 81 만원	23,857 ը	
2013년 4월 현재 표준이율(3.5%)가정시	매월 <mark>63</mark> 만원	매월 63만원	21,529 թ	
최저보증이율	매월 19만원	매월 19만원	15,366 만원	

주) 1,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울, 2013년 4월 현재 표준이율(3.5%) 및 최고 예시이율(『표준이율×1,2』(4.2%)와 현재 공시이율(신공시이율(연금)(4.05%)중 낮은 이율)를 기준으로 각각 계산된 금액입니다. 2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계약후 5년이하는 연복리 3.0%, 5년초과 10년이하는 연복리 2.0%, 10년초과는 연복리 1.5%)입니다. 3. 연금액의 계산은 신공시이율(연금)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신공시이율(연금)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중도인출

- 인출한도 : 연간 12회 범위 내 1회당 기본보험료 해지환급금의 50%+ 추가보험료 적립액
- 인출후 잔액
- 보험가입금액의 7% 해당액과 기납입보험료 7% 해당액 중 적은금액

추가납입

• 해당웤까지 납입함 기본보험료 (선납포함)의 200%

[매월 한도:기본보험료×200%×해당 경과월수(다만, 가입시 경과월수는 1개월) (선납포함) - 이미 납입한 추가보험료의 합계]

※ 추가보험료는 해당월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

- 보험가입후 납입기간의 1/2년이 경과된 이후 (다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년이 경과된 이후) 신청 가능
- 신청기능 횟수 : 총 5회를 한도로 하며,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유족연금전환보험 가입서비스

• 피보험자 시망시 보험금수익자 선택에 따라 사망시 지급되어지는 사망보험금 및 환급금을 연금재원으로 하여 유족연금전환보험으로 전환 가능

연금연액/해지환급금 예시표

연금지급액 예시표

*기준 : 남자 40세, 65세 연금개시, 월납 100만원, 5년납, 고액가산, 부부형 종피보험자 연금지급률 100% 가정 (단위 : 만원)

		구분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2013년 4월 현재 표준이율(3.5%)가정	2013년 4월 현재 공시이율(4,05%)가정	
	연금	금개시시점 계약	약자적립금		8,258	12,075	13,620
		10년보증	초년도 부터	매년	352	661	794
_	개인형	20년보증	초년도 부터	매년	341	642	771
종 신 연 금 형		100세보증	초년도 부터	매년	292	570	692
급	부부형	10년보증	초년도 부터	매년	280	557	678
0		20년보증	초년도 부터	매년	279	557	678
		100세보증	초년도 부터	매년	272	546	666
		5년확정	초년도 부터	매년	1,692	2,571	2,929
SLTA	비그런	10년확정	초년도 부터	매년	877	1,395	1,609
400	견금형	15년확정	초년도 부터	매년	606	1,007	1,175
		20년확정	초년도 부터	매년	471	816	962
1140		EN .	초년도	매년	121	404	525
상속연금형			차년도 이후	매년	120	404	525
사망시 상속일시금 지급				8,136	11,667	13,090	

주) 1. 상기 에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2013년 4월 현재 표준이율(3.5%) 및 최고 에시이율("표준이율×1.2/A.2%)와 현재 공시이율 신공시이율(연금) (4,05%)중 낮은 이율)를 기준으로 각각 계산된 금액입니다.

해지환급금 예시표

※기준 : 남자 40세, 65세 연금개시, 월납 100만원, 고액가산, 5년납 (단위 : 만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2013년 4월 현재 표준이율(3.5%)가정		2013년 4월 현재 공시이율(4.05%)가정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200	1,001	83.5%	1,004	83.7%	1,007	84.0%
3년	3,600	3,450	95.8%	3,477	96.6%	3,506	97.4%
5년	6,000	6,044	100.7%	6,120	102.0%	6,206	103.4%
7년	6,000	6,280	104.7%	6,549	109.2%	6,711	111.9%
10년	6,000	6,654	110.9%	7,250	120.8%	7,549	125.8%
15년	6,000	7,149	119.2%	8,591	143.2%	9,187	153,1%
20년	6,000	7,683	128,1%	10,183	169.7%	11,184	186.4%
25년	6,000	8,258	137.7%	12,075	201.3%	13,620	227,0%

주) 1.01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보장계약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미상각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2.} 종신연금형 및 확정연금형 중 자유설계형의 경우 보험기간 중 신공시이율(연금)이 빈경, 중도인출 및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및 보험료 납입중지로 인하여 계약시점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연액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경우 계약자는 연금개시전까지 연금액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3.}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종신연금형 100세 보증지급형의 경우 연금지급 보증기간은 연금개시일부터 100세 보험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2.} 상기 연금에시표의 연금액은 최저보증이율, 표준이율 3.5% 및 2013년 4월 현재 신공시이율(연금)(4.05%)이 각각 경과기간동안 계속 될 것을 전제로 산출하였으며, 향후 표준이율 및 신공시이율(연금) 변동시 연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후 5년이하는 연복리 3.0%, 5년초과 10년이하는 연복리 2.0%, 10년초과는 연복리 1.5%입니다.

^{4.} 계약자는 연금지급형태를 연금개시나이 해당일 전에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으로 변경 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형태의 변경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중 두가지의 연금지급형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 및 확정연금형 중 자유설계형을 선택시에는 자유설계형이외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2.} 상기 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2013년 4월현재 표준이율(3.5%) 및 최고 예시이율('표준이율×12,/4.2%)와 현재 공시이율 신공시이율(연금) (4,05%)중 낮은 이율)를 기준으로 각각 계산된 금액입니다.

^{3.} 실제 해지환급금은 신공시이율(연금)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신공시이율(연금) 변동시 해지환급금도 변동됩니다.

^{4.}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계약후 5년이하는 연복리 3.0%, 5년초과 10년이하는 연복리 2.0%, 10년초과는 연복리 1.5%) 및 현재 적용이율이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5.}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예시금액은 관련세법에 의한 세금공제전 기준입니다.